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8년 2월 11일

나. 회부일자 : 1998년 2월 11일

3. 제안이유

'97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도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완 규정하며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정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납세자권리보호 관련규정 신설

(1)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

- 도지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고시하고,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또는 세무조사 시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

(2) 수정신고 납부제도

-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장부 기장일, 법원의 확정판결일 등 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 또는 초과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와 환부이자 는 배제 하도록 함 (안 제7조)

(3)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등

- 현행 충청북도세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도세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도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되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인 공무원은 도지사가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

나. 도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관련규정 보완 정비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조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97. 10. 1)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5인이상 20인이하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이상 10인이하에서

⇒ 각각 45인이하 및 15인이하로 규정함(안 제9조 제3항)

(2)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확대

○ 천재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에 대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기한의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 6개월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안 제12조 제2항, 제3항)

(3)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보완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 취득세과세 대상 물건 취득시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규정에서

⇒ 실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종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24조)

(4)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중 지하자원에 대한 결정고시일 조정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이 되는 광물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년 2회 결정고시>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년 1회만 결정고시하도록 함

(안 제75조 제2항)

다. 도세목에 대한 기본적 사항 명시로 조례의 체계화

○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체계 구축

○ 현행 조례의 경우 각 세목(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마다 규정된 내용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 각 세목마다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 지방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내용을 체계적·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체계 구축

- 취득세 (안 제19조 <납세의무자> , 제22조 <세율>)
- 등록세 (안 제25조 <납세의무자> , 제28조 <과세표준> , 제29조 내지 제47조 <세율> , 제48조 <신고납부>)
- 면허세 (안 제49조 <납세의무자> , 제50조 <세율>)
- 공동시설세 (안 제59조 <과세표준 및 세율> , 제66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 지역개발세 (안 제65조 <과세대상> , 제66조 <납세지> , 제67조 <징수방법과 납기>)

※ 조례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을 도에서 자주적으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 세목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조례로서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며, 각 세목중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은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라. 기타 용어 정리

- 관련 개별법령 등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 정리
 - 건설기계 ⇒ 기계장비 (안 제24조)
 - 건설업법 ⇒ 건설산업기본법 (안 제24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세조례의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운영 목적을 명시 하였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 납부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의 위원 자격등의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5인이상 20인이하에서 45인이하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이상 10인이하에서 15인이하로 하였고 천재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에 대한 기한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 또한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에 있어서도 실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증 지하자원에 대한 결정고시를 년 2회에서 년 1회만 결정고시하도록 하는등 도세의 부과 징수를 위한 관련규정을 보완정비 하였으며

- 도세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인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체계화 하였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 부

-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